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51

발의연월일: 2024. 7. 18.

발 의 자:정성호·김현정·정준호

민병덕 • 한정애 • 김정호

이연희 · 최기상 · 박희승

임미애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두어 기업이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시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 부분을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연구개발 장비라도 그것이 사용되는 장소에 따라 기본 공제율을 적용받기도 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로 인정되어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기도 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국가 전략 연구개발 장비의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국가전략기술의 안정적인 개발과 적용을 위하여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의 범위 및 공제율, 일몰기한을 확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가.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 장비를 취득할 경우 취득금액의 100 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이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 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안 제10조의3 신설).
- 나.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이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함)에 토지 및 건축물을 포함시키고,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6년 연장함(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 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추가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4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함(안 제24조제1항제2호나목).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조의3(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장비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 장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장비"라 한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장비를 취득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1.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취득한 연구개발장비 금액의 10 0분의 15(중소기업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 2.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취득한 연구개발장비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중 "이하"를 "시설을 위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포함하고, 이하"로, "2024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 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100분의 4"를 "100분의 1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장비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비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신 설>	제10조의3(국가전략기술 관련 연 구개발장비 취득에 대한 세액 공제) ① 내국인이 국가전략기 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 장비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 비(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 장비"라 한다)를 취득하는 경 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장비를 취득한 과 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 도에 취득한 연구개발장비 금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 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 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 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 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 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 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 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 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 액을 공제한다.

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
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
배를 그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
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
<u>야 한다.</u>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

- 1. (생략)
- 2. 공제금액
 -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 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 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1) (생략)
 -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15(중소기업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 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 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 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

1.	(현행과 같음)
2.	
	가
	1) (현행과 같음)
	2)
	시설을 위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고,
	<u>이하2030년 12월 31</u>
	<u>일</u>
	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한도로 한다.

3. (생략)

② ~ ⑤ (생 략)

<u>100</u> 분의 <u>10</u>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